

-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-

심 사 보 고 서

2007.1.26(금)

제256회 임시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7년 1월 11일
- 회부일자 : 2007년 1월 17일

다. 상정일자 : 제256회 충청북도 임시회

- 2007. 1. 26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심사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 : 기획관리국장 신강탁)

가. 제안이유

-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부채규모를 감축하기 위하여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45조(「지방자치법」 제133조 준용)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을 설치하고, 그 관리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20퍼센트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, 직접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기금으로 출연하지 아니할 수 있음(안 제2조).
- 기금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함(안 제3조).
- 기금은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·운용하고,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함(안 제4조, 제5조).
- 교육감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,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(안 제6조).
-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에 기획관리국장, 기금출납원에 지방채업무담당사무관을 회계공무원으로 지정함(안 제7조).
- 기금관리·운용 심의를 위하여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개정함(부칙 제3조).

3. 검토보고 요지

(교육사회전문위원 : 이명우)

-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등의 필요로 발생한 지방채에 대한 안정적 상환재원을 확보하여 건전재정운영을 도모코자 제정하는 조례로, 기금조성의 목적과 관계 법령에 의거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
- 다만, 본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순세계 잉여금의 20%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는 것은 오히려 사업추진에 활용 할 수 있는 가용재원의 경직성을 증대시키고, 또한 자금 활용도가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
- 그리고 조례안 제1조의 조문 중 본 감채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의 설치 근거 법령으로 명시한 “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45조”의 조문은 지난해 2006년 12월 20일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이 전부개정으로 조례 설치법령근거가 변경되었기, 법령근거를 개정법률에 일치시키기 위해 “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조”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가. 수정이유

- 조례안 제1조의 조문 중 본 감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설치 근거 법령으로 명시한 “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45조”의 조문은 지난해 2006년 12월 20일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이 전부개정으로 조례 설치법령근거가 변경되었기, 법령근거를 개정법률에 일치시키기 위함

나. 주요내용

- 제정안 제1조 중 “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45조(지방자치법 제133조 준용)”을 “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조”로 함.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-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년월일 : 2007년 1월 26일
제안자 : 박영웅 의원외 6

□ 제안이유

- 조례안 제1조의 조문 중 본 감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설치 근거 법령으로 명시한 “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45조”의 조문은 지난해 2006년 12월 20일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의 전부개정으로 조례 설치법령근거가 변경되었기, 법령근거를 개정 법령에 일치시키기 위함

□ 주요내용

- 제정안 제1조 중 “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45조(지방자치법 제133조 준용)”을 “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조”로 함.

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

- 제정안 제1조 중 “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45조 (지방자치법 제133조 준용)”을 “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조”로 함.

수정안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이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부채규모를 감축하기 위하여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45조(「지방자치법」 제133조 준용)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, 그 관리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「지 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이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부채규모를 감축하기 위하여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45조(「지방자치법」 제133조 준용)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, 그 관리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금의 조성)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
2.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

②교육감은 매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지방재정법」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그 금액 범위 내에서 기금으로 출연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3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.

제4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교육감은 기금관리를 위하여 감채기금 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고,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
②기금은 교육금고에 예치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5조(기금관리·운용의 심의)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회에서 심의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2. 기금의 조성·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
3.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
4.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

제6조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) ①교육감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
2.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
3. 기타 기금운영상 필요한 사항

제7조(회계공무원)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.

1. 기금운용관 : 기획관리국장
2. 기금출납원 : 지방채업무담당사무관

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,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제8조(관계규정의 준용)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」을 준용한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「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5조에 관한 사항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133조(재산 및 기금의 설치)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,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③제1항의 재산이라 함은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.

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
제3조(「지방자치법」과의 관계) 지방자치단체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「지방자치법」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지방자치단체의 장” 또는 “시·도지사”는 “교육감”으로, “지방자치단체의 사무”는 “지방자치단체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”로, “자치사무”는 “교육·학예에 관한 자치사무”로, “행정자치부장관”·“주무부장관” 및 “중앙행정기관의 장”은 “교육인적자원부장관”으로 본다.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.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

여야 한다.

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③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,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

제3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.

②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.

□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(이하 “지방교육재정계획”이라 한다) 수립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지방교육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
2.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
3.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4. 기타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